

■ 최신 법령 ■
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

1. 주요 내용

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교육·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교육·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, 교육·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등의 업무를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만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\(2019. 6. 11. 시행\)](#)